#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입장료 징수에 대한 군민과 관람객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식물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법률 변경(안 제1조)
- (변경 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변경 후)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용어의 정의 삭제(안 제2조)

다. 입장료 무료 근거 마련(안 제7조)

라. 입장료 징수조항 삭제(안 제9조)

마.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사항 반영
- 식물원 입장 시 보조견 동반 장애인 확대(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주민복지과-53534(2018. 9. 27.〕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기획감사실-7526(2018. 9. 27.〕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8. 10. 8. ~ 2018. 10. 29.)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를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이하 “식물원” 이라 한다)”을 “가야산야생화식물원”으로, “사항과 식물원의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식물원은”을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은”으로, “가야산야생화식물원길 49번지”를 “가야산식물원길 49”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장료) 식물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관리 및 운영조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이하 "식물원"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식물원의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야산야생화식물원---------- 사항----------.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어린이"라 함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교 학생인자를 말한다.<br>2.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와 중・고등학생을 말한다.<br>3. "군인" 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교도경비대 등 포함)을 말한다.<br>4. "일반"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br>5. "단체"라 함은 유료입장객 중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삭 제> |
| 제3조(위치) 식물원은 경북 성주군 수륜 | 제3조(위치)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

| | |
|---|---|
| 면 가야산야생화식물원길 4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 (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은 ---가야산식물원길 49 -----. |
| 제7조(입장 및 입장료 등) 식물원 입장 및 입장료 등(입장료 면제·감면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사항은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입장료) 식물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 제9조(입장료 징수방법)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삭 제> |
| 제10조(입장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 제10조(입장의 금지)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자.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 6. ----------.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